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나4783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나4783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5747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D

변론 종결 2017. 4. 13.

판결 선고 2017. 5. 1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5747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에 2015. 2.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위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5. 2. 5. 접수 제113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피고 G", "피고 J", "피고 E"으로 표시된 것을 모두 "피고 D"으로 고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보충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① 2015. 2. 3.은 형식상 등기를 위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일뿐이고, 실제 매매일은 잔금이 납부된 2014. 12. 5.로서 피보전권리가 발생한 2015. 8. 20.보다 무려 9개월 전의 일이므로, 당시에 이미 피보전권리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H·I에 대한 채권은 처분행위 전후로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였고,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는 처분행위 이후에 8대를 판매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들 채권 및 음식물분쇄기는 모두 유효한 적극재산이라 할 것이고, 이들을 모두 적극재산에 반영하면 B은 처분행위 당시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 ③ 피보전권리 발생일로부터 9개월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수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한다고 인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고, ④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인 2015. 3. 18.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30,000,000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①, ③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갑 제9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매매계약일이 그 주장과 같이 2014. 12. 5.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①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③ 주장 또한 매매계약일이 2014. 12. 5.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수 없다.

2)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H·I에 대한 채권이 실재하는 유효한 채권이더라도 그 회수금이 채권 변제에 사용되었다거나 이를 위해 보전되고 있다는 등의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채권들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는 B이 아닌 주식회사 A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B이 처분행위 당시 무자력이라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④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므로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에 공동담보 재산이 그만큼 증가하는 결과로 됨은 사실이나, 설령 수익자가 취득 후 그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거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감소하여 확정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후 피담보채무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근저당권으로 부담하는 잠재적인 채무는 여전히 채권최고액 전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익자에 의한 채무 일부의 변제가 있는 경우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라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더라도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은성

판사정일예

판사이재경

별지